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84 | 2025.05.12 (2025.04.28~2025.05.1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4.28~2025.05.11)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국토교통부>는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제품과 신기술의 지정 취소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플랫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

정보제공자에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 · 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이언주의원 등 17인)**」 ,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

건설 · 부동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 · 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조정 대상별로 나눠진 조정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건설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기 위한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2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에서 5.14.(수) 조회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국토교통부) 7
-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9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9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9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0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2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12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2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3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4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통신위원회)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1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16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17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2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2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2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3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4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2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1인)	24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이언주의원 등 17인)	25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의원 등 13인)	25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26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6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	27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28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의원 등 41인)	2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9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의원 등 10인)	30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30
•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2인)	3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31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 윤영석의원 등 56인)	3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러시아]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자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 [바이오/헬스케어] 식약처의 식품, 화장품에 대한 최신 규제 동향 안내
- [건설/부동산] 프로젝트리츠 제도의 도입 및 시사점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3 (2025년 4월 5째주)
-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금지약물과 도핑 제재: 야닉 시너 사건을 중심으로
-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7 (2025년 5월)
-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스포츠 관련 분쟁의 유형별 분석
-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위사업계약 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받는 경우
지체상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4 (2025년 5월 1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 (중앙) 104개 사업, 약 3,800억원, (지자체) 1,105개 사업, 약 2,000억원 투자 예정 - 대용량 공간정보의 안정적인 수집·관리·제공을 위한 플랫폼 고도화 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보강 및 제공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반침하 안전 수준 분석	2025-05-02
-------	--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임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25년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음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DB)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됨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 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됨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됨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2단계 고도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번 고도화 계획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네이티브, 양자암호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용량 3D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K-GeoP, 브이월드와 같은 공간 플랫폼 기술의 개선으로 공간정보의 정확성, 속도, 활용성이 향상된다. 위성영상 등 대용량·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공간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

마지막으로,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공동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반 침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지반 침하 위험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예정임. 또한, 정확도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물 실측을 위한 예산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4개 부처 합동 빈집정비 TF,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계획 발표
- 빈집 정비 관련 세부담 완화,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빈집 정보 통합 제공 등 민간의 빈집 정비 활성화 지원

2025-05-01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고 밝힘

빈집정책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관계부처합동

빈집소유자

철거 후 세부담 완화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 확대('25년 下)

최대 5년 → **활용기간 전체**

철거 후 양도소득세 종교배제(10%p) 기간 확대

2년 → **5년**



철거비용 부담 경감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 신설 및 빈집 철거지원 확대

'24년 50억원 → '25년 100억원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25년 下)

*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생략



빈집거래 지원 등 빈집 활용 활성화

빈집(家) 플랫폼 거래지원체계 구축

('25년 下) 빈집 매물 공개, 중개사를 통해 거래 중개



지자체

도시·농어촌지역 빈집 업무 일원화

시도·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간 통합 업무추진을 위한 **참고조례안** 마련 및 **전담지원팀** 구축 지원('25년 下)



정보시스템 기반 빈집 정비업무 효율화

빈집(家) 플랫폼 내 업무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황관리 강화**('25년~) 및 빈집 소유주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연계('25년 下)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활용 방안 마련

빈집을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는데 지자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빈집맞춤형 정비·활용 가이드** 수립('25년 下)



중앙부처

국가 빈집 관리체계 구축

국가의 관리책무 **신설**, 빈집 대상 **특례 확대** 등 빈집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25년~)

* 농어촌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도시 「빈집관리법」 제정 추진



빈집 정비·활용 지원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어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빈집 특화형 **뉴딜리자 사업** 등을 통한 빈집 정비지원



사업자

빈집 활용 사업모델 발굴

법인 및 단체의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사업, 빈집의 관리·임대·운영 등을 실시하는 **빈집관리업 신설**('25년 下)



일반국민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

방치된 빈집을 철거·정비하여 **주거시설**, 주차장, **소공원**, **텃밭** 등으로 활용 빈집 주변은 지자체 등 협업으로 **CCTV**, **안전펜스** 설치



어디서나 빈집 정보 및 매물 정보 확인

빈집(家) 플랫폼을 통한 빈집현황, **관련정책**, **거래지원**, 빈집 **발생·확산 시 분석** 등 대국민 정보 제공 ('25년~)



연구기관

전국 빈집 데이터를 활용한 빈집 연구

빈집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빈집 확산·예측 시 분석**, 지방소멸 등 관련 연구 시 빈집 데이터 활용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5-07 시행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추가하고,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소각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로 정하고,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 말일 또는 권리 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 등 보유·거래내역,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5-01 시행
-------	----------------------------------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5-01 시행
-------	---------------------------------------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19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축소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29 시행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종전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여 지역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1-01 시행 예정

사행산업에 관한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종전에는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조사·연구·홍보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불법사행산업 감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의 출입만 허용되어 내국인의 도박중독과 무관한 카지노업을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중 특정 평가 항목에 대한 결과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해 업종별 매출총량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29 시행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내실 있는 보유인력 관리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타워크레인 업무와 관련된 보유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5-01 시행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일정한 경우에 완화하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의 통지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759호, 2025. 1. 31.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고시한 날 이후로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복리시설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의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통합심의 사항에 성능위주설계의 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던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24명 이상 150명 이하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5-07 시행

건설기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게차 중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기계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30. ~2025.06.09.

서민 생계지원 등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및 제19조)
 - 건설기계사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지원을 위해 교통수단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가능하던 것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로 확대하도록 함
- ②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 확대 (안 제29조)
 - 긴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등에서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확대하도록 함
- ③ 광고물 특정구역의 해제 근거 명확화 (안 제21조, 제25조, 제28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한 광고물 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이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전화: 044-205-3544, 팩스: 044-205-896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2025.06.09.
-------	--------------------	-----------------------------

재난안전 인증제품이 타 법령에 따라 인증받는 제품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제도 운영 취지와 달리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재난안전제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오해와 인증이라는 용어가 강한 규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제품과 신기술의 지정 취소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전화: 044-205-4185, 팩스: 044-205-8912)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5.09. ~2025.06.18.
-------	------------------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766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점검 결과 공개 시 점검 시기 및 대상,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제공 실태점검 결과 공개사항 마련**

- 점검 시기 및 점검 대상, 정보 제공 실태 등을 포함하여야 함

②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제공 실태점검 업무를 지방항공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안 제33조제1항제4호나목,마목)
- 항공운송총대리점자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안 제33조제1항제30호차목)
- 여행업자의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안 제33조제2항)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전화: 044-201-4217, 팩스: 044-201-5624\)](tel:044-201-421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30.
~2025.06.09.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에 따라,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83, 팩스: 043-719-2180\)](tel:043-719-2183)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29.
~2025.06.09.

제2차 보험개혁회의('24.8월)에서 발표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을 확대하고 보험 민원처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한편, 제7차 보험개혁회의('25.3월)를 통해 발표한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의 후속조치로서 자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및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 (시행령안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별표3, 별표4, 규정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9조, 제4-11조, 제4-40조, 제7-73조, 별표5의6)
 - 현재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제3보험 및 생명보험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
- ②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 (시행령안 제84조, 제102조, 규정안 제9-4조의3)
 - 보험협회가 단순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③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합리화** (시행령안 제57조의2, 규정안 제2-6조의3, 제3-5조의2, 제6-11조의6, 제7-10조, 별표 11-2)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보험종목 추가 허가 요건 등 지급여력비율 관련 감독기준을 130% 수준으로 합리화
- ④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시행령안 제59조)
 - 보험회사가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자회사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

※ 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tel:02-2100-2964) (전화: 02-2100-2964, 팩스: 02-2100-294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5.08.
~2025.06.1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가운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위 두 가지 서비스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단위 신설 및 업무기준 마련** (제15조, 제19조의3, 제177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354조의2, 별표 1, 별표 5, 별표 20)
 -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허용을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동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매매체결 방법, 공시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이해상충방지 등)을 규정

②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제11조)

-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더해 벤처투자회사, 벤처펀드,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전문종목의 유통성 제고

③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관련 매출 증권신고서 면제 (제120조, 제137조)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유통플랫폼에서 소액출자자의 거래는 매출 증권신고서 제출 대신 간소화된 유통공시를 하도록 특례 부여

④ 수익증권을 활용한 주식 소수점 투자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 (제7조, 제119조)

- 예탁결제원이 온주를 신탁받아 다수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tel:02-2100-2644) (전화: 02-2100-2644, 팩스: 02-2100-2648)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28.
~2025.06.0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67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tel:02-2110-1533) (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05-09 발의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하고자 함. 지난 2월 28일 유명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했음. 그동안 소장용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음. 2022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제공중단에 의한 피해’가 전체 24.4%를 차지해 피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잇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 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 (안 제733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2025-04-28 발의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법인 아닌 단체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명칭이 혼동되고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이용하여 최근 개인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 고자 함 (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2025-04-28 발의
현행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등 각종 부과금에 있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형 플랫폼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입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그 내역이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입점업체에 따라 임의적인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플랫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45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025-04-28 발의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35조의4)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0인)

2025-05-01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2025년 4월 22일,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의 대규모 USIM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례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유출 당사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사후적으로 유통 실태를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3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025-05-08 발의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금 유통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변종 금융사기인 소위 내구제 대출이 10년 넘게 성행하고 있음. 그 대표적 방식인 이른바 휴대폰깡은 자금 유통을 원하는 대출희망자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 현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대출희망자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유통받을 수 있지만 받은 금액에 비하여 법정최고이자율 훨씬 넘는 금액을 할부금으로 갚아야 하는 등 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떨어지게 됨

하지만 이는 판례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에는 고가의 가전 렌탈을 악용한 내구제 대출의 피해 사례도 계속되면서 진화하고 있는 내구제 대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소위 카드깡 등 유사한 형태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벌칙 조항을 두어 신용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한 물건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유통하여 주는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유통하거나,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유통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휴대폰 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할부거래가 현금 유통 수단으로 악용되어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7조의2 및 제48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5-04-29 발의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K콘텐츠 진흥과 수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공연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2023년 기준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 6,500만 달러로 방송(8억 2,300만 달러), 영화(8,300만 달러)보다 높으며, 취업유발계수 또한 17.868명으로 방송(10.669명), 영화/애니(13.034명)산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K-콘텐츠 중 가장 높은 국가경제 기여 핵심산업으로 지속성장 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또한, 영국은 창의 산업 전반에 최대 45% 공제율을 적용하고, 미국도 뉴욕주 등에서 공연 제작에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프랑스는 공연 예술 제작비용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연콘텐츠의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세제 지원책을 시행 중임

이에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5조의8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2025-05-07 발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 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5조의5제1항 개정)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5-05-08 발의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화물운송주선업자)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국적선사)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적선사 이용비용 40% 이상과 전년대비 국적선사 이용율 증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세제혜택 요건 때문에 현재 세제혜택을 받는 화주는 없으며, 이로 인해 국적선사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본 특례의 공제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하고 물동량(TEU) 기준을 추가 및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의의원 등 11인)

2025-05-09 발의

AI發 전력수요 폭증으로 2050년 전기수요는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R&D 연구 및 시설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음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대규모 설치가 가능하고 이용률도 높으며, 시간 제약 없이 밤·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정성 확보에도 유리함.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보급지연으로 국내 생태계는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선진국과 중국 업체의 국내시장 독점으로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

차세대 소형 원전도 안정성과 공기 단축 등 장점을 기반으로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은 폭발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전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팩리스는 80여 개이나 설비제작이 가능한 파운드리스는 7개 뿐으로 시장 선점 여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0조제1항제2호)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2025-05-09 발의

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 대 3 혹은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음(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그런데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도 증가하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되어, 낮은 주가가 상속·증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최대주주는 통상적으로 해당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의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곤 함. 결국 한국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고자 함. 아울러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하여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부득이하게 세금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자 함 (안 제63조 등)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2025-04-29 발의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75조의5제2항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25-04-28 발의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는 가입자 고유정보인 유심정보를 탈취당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SKT는 인지 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약 1,600명 순감한 것으로 드러났음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 문자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개인정보 관련 침해사고 발생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임.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50조제1항제5호의4 및 제52조제2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2025-04-30 발의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나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이나 사자를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조롱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또는 사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 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자 함 (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2025-05-01 발의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생성물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비한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화장품, 탈모치료제, 다이어트보조제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허위의 영상을 생성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생성물에 대해서도 표시의무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정보제공자에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42조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2025-05-01 발의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반복적인 통신 장애, 부당 요금 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자유로운 해지가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귀책사유의 유형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없이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여 통신시장 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안 제32조의20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025-05-08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할 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이용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 제32조의4제5항 신설 및 제104조제2항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05-01 발의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함. 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PC 게임에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음. 또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또,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12조의3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2025-04-30 발의

2024년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기술규제의 도입으로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문서의 건수는 4,337건으로,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정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재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고,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는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부설조직으로 설치되어 공공성 담보에 한계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 원활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2025-04-30 발의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아 자유무역지역이 낙후된 채 방치되는 상황임. 최근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토지 분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 재투자 및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입주 계약 체결 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2025-05-01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수탁·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개선 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위탁거래를 위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이언주의원 등 17인)

2025-05-02 발의

세계 경제는 디지털화, 탄소중립 및 에너지효율화 등 신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두로 산업구조적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들은 생산,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 핵심적인 주력산업으로서 산업경쟁력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주력산업의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 등 고부가가치화 전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향후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의원 등 13인)

2025-05-02 발의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이며,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하고 2038년까지 12기를 양수, 수소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석탄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점, 최근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보다 가속화된 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기존의 계획보다도 조기에 폐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불가피하게 관련 산업, 노동자, 지역경제 전반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함께 지역경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노동자와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2025-05-02 발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5-05-07 발의

지난 1986년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처음 도입된 이후 LNG 도입 부문은 약 20년 동안 가스공사의 독점 체제가 이어져 왔음. 이후 1997년 **舊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시장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발전용 및 산업용 대규모 사업자의 자가소비용 도입이 허용되었고 2005년에 이르러 직수입 물량이 처음으로 국내에 수입되었음. 2005년 33만 톤에 불과했던 LNG 직수입 물량은 2024년 1,223만 톤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LNG 수입량의 26%에 해당함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천연가스 도매시장과 배관망은 여전히 한국가스공사 독점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배관망의 경우 가스공사가 소유자이자 운영자로서 배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전권을 보유하고 있어 망 확충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망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활용을 목적으로 한 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위하여 **가스공사가 배관망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관시설이용자의 가스 인입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관망 신설 확충 및 압력 보강 등 증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재원은 시설이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이용요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배관시설 확충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명확히 정하고자 함 (제39조의7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

2025-05-01 발의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인정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025-04-28 발의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음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되었는데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수준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많고, 공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확인·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역주민·전문가·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025-05-01 발의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객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마음이 바뀌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려는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고객을 내보내거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다시 담아주는 불편을 감수해 왔음

그러나 사업자가 무인판매 키오스크 자막이나 방송 등으로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 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

이에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하여 해당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 신설, 제41조제2항제3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2025-05-01 발의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 또는 기업들이 1주간 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주일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69조)

환경노동위원회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의원 등 41인)

2025-05-01 발의

최근 다양한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속에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등은 일터에서 괴롭힘이 개인의 존엄성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에 대해 일부 규정하고 있을 뿐,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서 실질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괴롭힘과 성희롱이 이원적으로 규율되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가 단편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뿐 아니라, 일터에서의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규율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일터에서의 괴롭힘은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무제공자와 고객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괴롭힘의 개념과 금지 행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공개해 노무제공자와 고객등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허위신고 등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상대방 권익을 존중할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징계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하고 제도 오남용은 방지하는 균형잡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사업장 내 자율적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성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일터에서의 괴롭힘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05-09 발의

불평등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

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로, 남성이 임금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5만 3,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지난 1996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한 이래 줄곧 회원국 가운데 성별 임금격차 1위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 등 다양한 남녀 불평등 문제가 함축되어 있음. 이를 개선하고자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첫째, 노동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함

둘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별 직종·직급·근속연수·임금수준 현황 등을 포함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매년 작성·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안 제8조의2 및 제17조의10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5-04-28 발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 중 건축주가완화된 주차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단독 주거시설을 분양한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현장에 수없이 많음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근린생활시설은 전체가 위반 면적이므로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025-05-01 발의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2인)

2025-05-01 발의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운영 중에 있음. 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되어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면서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시간과 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정기구 간 정보교류 미흡으로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 조정기구는 분쟁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으로, 통일된 분쟁조정 규약을 마련하고 분쟁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본적인 분쟁 감소를 위한 제도,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관련 통합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건설·부동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분쟁 조정 대상별로 나뉜 조정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건설공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2025-05-01 발의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견본주택을 통해 입주 희망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7항 및 제104조제4호의6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윤영석의원 등 56인)

2025-05-09 발의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2항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5/14(수) 10:00	-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5/12(월) 14:00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동진·안철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5/12(월) 15:00	대만·독일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과 한국의 정책 방향	서왕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5/13(화) 14:00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나경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5/14(수) 14:00	해상풍력어업인 보상 토론회	박지원·김원이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5/15(목) 13:30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	차규근·한창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5/12(월)	「Data+」 제8호(2025-8호) 발간	국회도서관	
	5/14(수)	「금주의 서평」 제728호(2025-19호) 발간		
	5/15(목)	「최신외국정책정보」 제9호(2025-9호) 발간		
	5/13(화)	「NABO Focus」 제108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28(월)	「Data+」 제7호(2025-7호)	국회도서관	
	4/2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0호(2025-7호)		
	4/30(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8호(2025-8호)		
	4/30(수)	「금주의 서평」 제726호(2025-17호)		
	4/30(수)	「Data&Law」 제28호(2025-3호)		
	4/29(화)	「NABO Focus」 제105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4.28.~2025.05.11)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29(화)	러시아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자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4/30(수)	바이오/헬스케어	식약처의 식품, 화장품에 대한 최신 규제 동향 안내
4/30(수)	건설/부동산	프로젝트리츠 제도의 도입 및 시사점
4/30(수)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5/2(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3 (2025년 4월 5째주)
5/2(금)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금지약물과 도핑 제재: 야닉 시너 사건을 중심으로
5/2(금)	금융	금융투자업권 금융규제 월간 브리핑- Vol.7 (2025년 5월)
5/8(목)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스포츠 관련 분쟁의 유형별 분석
5/8(목)	국방획득/방위산업	방위사업계약 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받는 경우 지체상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9(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4 (2025년 5월 1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